



보도	2023.10.25.(수) 조간	배포	2023.10.24.(화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 검사2팀	책임자	국 장	윤영준 (02-3145-7790)
		담당자	부국장	김경수 (02-3145-7770)
			팀 장	김연상 (02-3145-7789)

## ○○생보사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결과 (잠정)

### - 주요 내용 -

◆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'23.9.4.~9.15. 기간 중 ○○생보사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\*하였습니다.

\* '23.4월 ○○생보사의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의혹 기사가 보도된 후 임원 면담 등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소명부족 등으로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

○ 검사결과, ○○생보사는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

-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임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◆ 금융감독원은 ○○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·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

○ 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

○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·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## 1 | 검사결과 개요

- ○○생보사는 A테니스장\*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('22.12월)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

\*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유 '공유재산'으로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용·수익허가권 부여

- ① '22.10월 B사가 낙찰 받은 A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(26.6억원, 3년 분할납)을 기본 광고비(연간 9억원, 3년간 총 27억원)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, 이중 1년차분 9억원을 지급('22.10월~12월)하였으며
- ② '22.12월 A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(9억원)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
- ③ A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,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.6억원을 지급('23.5월~8월)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또한, ○○생보사는 임원이 회사의 내규를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이를 지급하였고

- 임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.

## 2 |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### 1. A테니스장 운영 관련

- ① ○○생보사는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A테니스장에 대하여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

- ○○생보사는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\*한 A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B사를 참여토록 한 뒤,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고

\* A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고, 낙찰자는 '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(轉貸)'를 할 수 없음

- 내부적으로는 A테니스장의 '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' 등 입찰 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하여 왔습니다.

**< 실제 사용 용도와 계약서상 표현 비교 >**

실제 사용 용도	계약서상 표현
- 사용료	- 기본 광고비
- 시설개선공사비	- 추가 광고비
- 위탁운영비	- 광고프로모션비
- 운영관리비	- 광고대행수수료

2 ○○생보사는 A테니스장 입찰 금액 등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.

- B사가 제안한 A테니스장 입찰금액(26.6억원) 및 시설보수 비용이 상당히 고가\*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기본 광고비(1차년도분) 및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며

\* 직전 A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(3.7억원) 및 최저 입찰가(6.4억원) 대비 4.1배~7.1배 높은 금액이며, B사가 최초 제안한 금액(3년간 21억원)보다도 5.6억원 높은 금액

- 심지어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인력의 인건비,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사실상 A테니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지급하여 왔습니다.

3 광고계약상 설치하기로 한 A테니스장 광고물을 철거하였음에도 최근까지 이를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

- A테니스장에 **광고물 설치 후 상시 광고물 설치의 적법성**에 대한 **의혹**이 제기되자 대부분의 **광고물을 철거**하였음에도
- **기본 광고비 조정 등 별도의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** 현재 까지 **방치**하고 있으며, A테니스장 **사용실적**에 대한 **사후관리** 또한 **미흡\***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\* 일반 임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A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사후 비용 정산을 위해 철저하게 사용이력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, 일부 임원은 별도의 이용 절차 및 비용 지급 없이 A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

## 2. 사업비 집행 관련

**1 일부 임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시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.**

- ○○생보사는 임원 **해외출장비** 등 경비 집행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,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**않음**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고
- 근거 없이 **업무추진비** 등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**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**하였습니다.

## 3 조치예정내용

- 금감원은 ○○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**위규행위**에 대하여는 관련 **검사·제재규정**에 따라 **조치**하는 한편
- 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**회사**에 끼친 **손해**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**관련 법규**에 따라 필요시 **수사기관** 등에 **통보**할 예정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